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 방 교 부 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(안 제10조의3)

- 1)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
- 2) 현행 지역교육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으로 대체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산·양육환경 조성 노력 촉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4. 8. 30. ~ 10. 10.)
- 3) 행정규제 :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“35”를 “2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저출생 대응: 100분의 25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3(부동산교부세의 교부 기준 등) ① 법 제9조의3제2항 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0조의3(부동산교부세의 교부 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.
1. 특별자치시·시·군 및 자치 구: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 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. (생략) 나. 사회복지: 100분의 <u>35</u> 다. <u>지역교육: 100분의 10</u> 라. (생략)	1. -----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<u>20</u> 다. <u>저출생 대응: 100분의 25</u> 라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교부세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754